##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090

발의연월일: 2024. 9. 19.

발 의 자:전용기·허 영·주철현

허종식 · 강준현 · 서미화

민병덕 • 이수진 • 이언주

김용만 • 정준호 • 민형배

오세희 • 박희승 • 송옥주

아태준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우 및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그동안 다수 발생하였음. 특히 소위 (반)지하주택에 거주했던 국민들의 피해가 컸는데, 그에 따라 원칙적으로 (반)지하주택의 신축을 금지하는 「건축법」 개정 등 변화도있었음.

그러나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현재 존재하는 (반)지하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상시적으로 필요함. 그간 가장 피해가 컸던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제20조 주거실태조사의 제2항제4호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려 함.

현재는 실태조사 대상으로서 법률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도 (반)지하주택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서울시 뿐아니라 경기도에도 (반)지하주택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의기타 지역을 포괄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안 제20조제2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생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	②		
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4. 「건축법」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		
<u>4.</u> ~ <u>7.</u> (생 략)	<u>5.</u> ~ <u>8.</u> (현행 제4호부터 제7		
	호까지와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